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유 병 옥**

-
- I. 서 론
 - II.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 III.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한계
 - IV. 결 론
-

주제어 : UNCITRAL 중재규칙, 중재규칙, 모델중재법, 임의중재, 준거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상설중재법정

I. 서 론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중재규칙의 국제적 모델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본 중재규칙은 1976년 제정된 이후 이미 3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변화된 중재관행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목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중재규칙 변화의 필요성에 부합하여 유수의 상설중재기관인 런던국제중재협회(LCIA), 미국중재협회(AAA), ICC 중재재판소의 중재규칙 등이 현대적 중재관행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을 간과할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UNCITRAL 작업부에서는 2006년에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을 우선과제로서 설정하였으며,¹⁾ 2010년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을 선보이게 되었다.²⁾ 새로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중재규칙의 기본 구조를 따르며 국제상사관계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가치 및 국제경제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중재규칙으로서의 기본정신을 유지³⁾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은 2010년 6월에 채택되고 동년 8월15일에 발효되었다.⁴⁾

UNCITRAL 중재규칙은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중재규칙의 현대적 모습과 경향 및 국제적 통일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개정이 되기 때문이다.

UNCITRAL은 국제상거래 관련 통일협약 및 모델법⁵⁾ 등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국제상거래분야에서 국제법제의 경향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관련 법제의 변화방향과 정도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더불어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을 고찰함으로써 국제적 상거래 분쟁환경의 변화와 현대적 중재관행을 수용하고자 하는 각국의 중재규칙의 개정방향과 핵심영역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또한 실무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은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를 위한 중재규칙으로서 그 적용이 제한된 것은 아니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간 분쟁이나

1) General Assembly, A/CN.9/614, 5 October 2006, p. 2.

2) 2006년 6월-7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39차 회기에서 UNCITRAL 중재규칙을 우선과제로 채택하였다.

3) General Assembly, Thirty first Session, 99th plenary meeting 15 December 1976.;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arbitration/2010Arbitration_rules.html, 2010-UNCITRAL Arbitration Rules(as revised in 2010).

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65/22, Sixty-fifth session Agenda item 77, 10 January 2011, p. 2.

5) UNCITRAL 모델중재법 1985 및 개정 모델중재법 2006은 전 세계 65개국 및 연방주 중재법제에 기초가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uncitral.org> 참조.

양자간 무역분쟁(bilateral trade agreement)에서 그리고 중재기관에 의한 상사 분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재규칙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본고는 UNCITRAL 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된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중재규칙의 경향을 파악하고 실무적 적용에 대응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중재규칙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물로는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강빈의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⁶⁾ 강병근의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초안 내용의 분석과 방향검토’,⁷⁾가 있다. 위 논문은 개정작업 과정의 선행논문으로서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개정이 완료된 개정규정에 관한 연구로서 노태약의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⁸⁾와 강병근의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⁹⁾가 있다. 개정된 중재규칙이 채택된 이후 연구된 노태약의 연구는 서면성과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고, 강병근의 연구는 개정된 중재규칙의 조문을 중심으로 구중재규칙과 비교하여 총칙,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으로 구분하여 해설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타의 국제중재규칙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UNCITRAL 중재규칙의 주요 개정 방향과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정된 국제중재규칙과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정 중재규칙의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중재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6)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7) 강병근,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초안 내용의 분석과 방향검토”,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

8) 노태약,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9)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3.

II.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1. UNCITRAL 중재규칙의 의의와 개정 방향

1) UNCITRAL 중재규칙 1973의 의의와 과제

UNCITRAL 중재규칙은 1973년 중재규칙이 준비되기 시작하여 1976년 12월 15일에 채택되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분쟁해결의 공식적인 해결메카니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유연하면서도 국제적 중재규칙의 통일성, 예견 가능성 및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제정되었다.¹⁰⁾ 본 규칙은 보통법과 대륙법 및 다른 법계들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UNCITRAL 중재규칙은 특히 기관중재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재규칙이 요구되는 임의중재에 이용되었고, 많은 중재기관들의 기관중재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본 규칙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¹¹⁾

본 중재규칙이 제정된 이후 이미 30년 이상 그 가치와 성공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며¹²⁾ 새로운 중재환경과 관행의 변화에 따른 중재규칙으로는 개정이 요구되었다.

이미 수십년 동안 중재규칙으로서 모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재규칙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구조의 변경이 아닌 그 정신과 스타일은 유지하는 중재규칙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더불어 이미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설중재기관의 개정된 중재규칙과의 격차를 무시할 수 없고 전자통신을 비롯한 변화된 현대적 중재실무와 통용되는 중재관행이 중재제도에 함축되어야 성공적 지위와 위상을 유지할 수 있기에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0) General Assembly—Thirty first Session, 99th plenary meeting, 15 December 1976.

11) IACAC, ICDR, HKIAC, QICCA 등은 전면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을 참고하고 있다.

12) 이강빈, 전계논문, 2007, p. 45.

2) 개정 방향

2006년 UNCITRAL 중재작업부에 의해 우선 작업과제로 선정된 이후 초안이 만들어지고, UNCITRAL 위원회에 당해 초안이 제출되어 개정규칙으로서 2010년 6월 25일 UNCITRAL 개정중재규칙이 채택되었다. 본 UNCITRAL 개정중재규칙은 2010년 8월 15일 이후 효력을 발휘하여 합의에 의해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¹³⁾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기존의 1976년 중재규칙의 기본 구조나 형식으로부터 탈피한 아주 별개의 규칙으로 바뀌어 진 것은 아니다. 구조나 정신 및 스타일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복잡성을 지양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중재에서의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¹⁴⁾이 이루어졌으므로 중재규칙에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더불어 투자분쟁 및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포함하여 국제통상 및 상사분쟁에 적용 가능한 적절하고 유용한 중재규칙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UNCITRAL 중재규칙의 개정 규정이 여러 부분에서 수정되고 변경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개정 중재규칙은 그 양적인 면에서 기존의 중재규칙 보다 확대되었고 부록이 새롭게 첨부되었다. 1976년 중재규칙이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정규칙은 중재통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이나 지정기관과 중재인의 면책 등이 신설되고 이전 규정보다 상세하고 명료하게 재편되면서 43개 조문으로 늘어났으며, 새롭게 구성된 부록에는 표준중재약정을 포함하여 독립성에 관한 모델진술서, 권리포기서 등을 수록하였다.¹⁵⁾

둘째, 그 내용에 있어서 개정중재규칙은 1976년 규칙의 거의 절반은 미세한

13) PLC Arbitra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0: key chang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2010. 8. cited from <http://arbitration.practicallaw.com/8-502-9792>

14) UNCITRAL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은 1985년 채택된 이후 2006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제17조의 임시적 처분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5) UNCITRAL 개정중재규칙 Annex에는 Model arbitration clause for contracts, Possible waiver statement, Model statements of independence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Rules 등을 추가하였다.

조문의 변경을 포함하여 그 내용의 수정과 변경이 이루어졌다. 특히 용어의 표현이나 서면요건을 변경하였다.¹⁶⁾

셋째, 질적인 면에서 개정 중재규칙은 중재규정상 불확실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일부 추가하거나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¹⁷⁾이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중재인의 면책규정은 구 중재규칙에선 언급이 없었지만 개정중재규칙에서는 이를 규정하였다.¹⁸⁾ 또한 중재인 지정권자에 중재신청통지서나 계약서사본의 송부를 구하는 규정은 그 효과에 있어서 본 규칙의 다른 규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되었다.¹⁹⁾

2.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1) 적용범위의 확대

비계약적 성질의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 중재규칙에서 적용범위는 중재에 제기되는 분쟁유형을 계약적 성격의 분쟁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²⁰⁾ 기존의 UNCITRAL 구 중재규칙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할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²¹⁾

16) 예를 들어 'place of arbitration'과 'location', 'seat', 'venue'을 구별하여 법리적 장소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place of arbitration'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소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loc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표현과 일관성을 갖는 표기이다. 또한 중재합의 형식의 서면(in writing)의 요건제한에서 벗어나 'any means of communication'을 규정하여 현대적 통신방법인 'record'나 'email' 등을 포함하였다.

17)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6조.

18)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6조.

19)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8조.

20)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조 1항, "where parties have agreed that disputes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u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

21)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1조 1항,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have agreed in writing that disputes in relation to that contract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중재에 의해 해결 가능한 문제를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of subject matter)이라고 한다.²²⁾ 이러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대상 범위는 상설 중재기관이나 각국의 추구하는 목적과 법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ICC 중재법원의 경우 ICC 중재규칙 1998에 따르면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대상은 ‘국제적인 성격을 띤 상사분쟁’(settlement by arbitration of business disputes of an international character)로 규정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제한범위는 투자분쟁이나 FTA(free trade agreement)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논란으로 새로 개정된 ICC 중재규칙 2012에서는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포괄적인 분쟁대상의 중재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현대적 중재관행에 따른 중재로 취급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경향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대상의 확산 경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중재가능성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재의 적용영역을 넓히고 있다.

2) 전자통신 환경의 수용

UNCITRAL 구 중재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중재합의의 형식요건을 삭제하고 있다.²⁴⁾ 즉, in writing(서면형식의 요건)을 본 개정규칙에서 삭제하였다. 본 규칙에서는 형식요건에서 자유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재합의의 형식요건을 본 규칙에서 유지할 경우 현대적인 중재법제로 개정된 국내 중재법과 충돌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요건의 문제는 중재규칙이 아닌 준거법에 따른다.²⁵⁾ UNCITRAL 개정 중재규칙과 맥을 함께 하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경우 2006년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여 서면성의 범

2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6, p.56.

23) ICC 중재규칙 1998, 제1조 1항.

24)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1조 1항,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have agreed in writing".

25) 준거법에 관련 형식요건을 위임함으로써 법리적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편리성을 따르도록 당사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위를 확대하는 option I과 아예 서면성을 폐지하는 option II를 동시에 채택하였다. 이는 전자계약협약²⁶⁾의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와 전자문서(data message)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으로 상당한 국가들이 지지를 하였다.²⁷⁾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통지, 중재판정부와의 통신에 있어서도 전자적 통신의 이용을 수용하고 있다.²⁸⁾ 즉, 'any means of communication'(모든 통신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record, email을 포함함으로써 특정한 정보통신기술을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전자통신 환경을 수용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3)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피신청인의 항변기회제공 규정의 신설

UNCITRAL 중재규칙에서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 신청인의 청구내용이나 변론에 대하여 언급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개정 이전의 중재규칙이었으나,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에 대한 항변할 기회를 중재판정부의 구성이전에 신청인에게 답변하도록 규정²⁹⁾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피신청인은 중재통지를 수령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중재통지의 답변을 하여야 한다. 비록 피신청인의 답변이 불완전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중재판정부의 구성에는 영향이 없다.³⁰⁾ 이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피신청인의 답변기회가 배제되고 피신청인의 불안한 지위가 있다는 중재실무자들의 의견이 조율된 신설규정이다. 이를 통해 중재 실무적으로 답변을 통해 항변을 이해함으로써 대안적인 해결 등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대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

26) UNCITRAL의 제정협약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2005'이다.

27) 노태약, 전계논문, 2010, p.115

28) UNCIRTRAL 개정 중재규칙 제2조 1항("A notice, including a notification, communication or proposal, may be transmitted by any means of communication that provides or allows for a record of its transmission"), 제5조 및 6조의 서면(in writing)의 통지 내용을 없앴으로써 통지방법을 개방하고 있다.(구 중재규칙 제4조와 비교).

29)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4조.

30)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4조 3항.

을 것이다.

4) 임시적 처분의 상세화

중재는 사적분쟁해결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자율 이행으로만 맡기기엔 중재의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의 경우에 유사하게 중재법제는 중재과정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적으로 개정되는 중재법제에서는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실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최종적인 분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재판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모든 임시적 조치로서 임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³¹⁾ 구 UNCITRAL 중재규칙이 1976 에서도 일방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미흡하였고 규정상의 흠결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중재규칙은 구 중재규칙 1976의 관련 규정보다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³²⁾

이와 함께 분쟁관련 임시적 처분에 따른 부당한 비용과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을 원인으로 타방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과정에 중재판정으로 관련 비용과 손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³⁾

5) 불완전중재판정부(truncated tribunal)의 도입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중재의 절차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중재판

31)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6조.

32)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의 임시적 처분 규정은 UNCITRAL 개정중재모델법(2006)을 수용하고 있다.

33)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6조 8항.

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불완전중재판정부(truncated tribunal)³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파격적이다.³⁵⁾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개정안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UNCITRAL 작업부였다.³⁶⁾ UNCITRAL 작업부는 불완전 중재판정부가 적용되는 그 행위의 유형과 그 규정의 적용시점 등을 명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서로 불완전중재판정부의 구성에서 시간적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³⁷⁾ 파격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불완전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중재규칙에서는 예외적으로 일방당사자의 교체중재인 지정권의 박탈이 정당한 경우에 당사자의 요청으로 지정권자가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교체중재인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 선택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정기관이 대체 중재인을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체중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중재심문이 종료된 이후라는 전제하에 성실하게 중재진행에 임하고 있는 나머지 중재인들에게 중재의 결정과 중재판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³⁸⁾

6) 다수당사자중재 및 연합중재의 수용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전반에 걸쳐 다수당사자(multi-party)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즉, 중재규칙은 중재통지와 중재통지의 답변에서 “당사자들(parties)”로 용어를 규정하여 다수당사자중재(multi-party arbitration)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⁹⁾

34) 불완전중재판정부란 중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다양한 사유로 결석인 경우 남아있는 중재인들이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제도를 의미한다.

35)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규정은 UNCITRAL 모델중재법 2006의 개정규정에서도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ICC 중재규칙이나 LCIA 중재규칙에서도 중재판정부의 재량권 하에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법리를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선택적 및 특별한 시기적 조건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관련 규정을 선보였다는 것은 독보적인 시도라 여겨진다.

36)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p.151-152.

3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N.9/665, September 30, 2008, pp.21-22.

38)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14조 2항.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이나 합작투자 등에서 하부계약이 종속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은 연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들이나 다른 당사자들이 등장하는 다수의 분쟁구조를 갖게 된다. 분쟁해결을 위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계된 하나의 중재절차로 병합하여 분쟁해결을 해결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재절차의 병합은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⁰⁾ 뿐만 아니라 연쇄적인 분쟁문제를 다루면서 별개로 중재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불일치한 중재판정의 가능성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3당사자가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같이 특정 당사자에게 권리침해나 편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3자의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⁴¹⁾

7) 중재절차의 체계화

UNCITRAL 중재규칙의 중요한 부분은 임의중재를 선택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선별된 규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관중재를 통해 서비스될 수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선행하여 관련 중재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재절차의 지연은 모든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중재제도의 제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지정권자의 역할이다. UNCITRAL은 중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규칙상 지정권자를 지정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⁴²⁾ 지정권자의 선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UNCITRAL 중재규칙 1976

39)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3조, 개정중재규칙 제3조 및 제4조 참조.

40) 중재절차 중에 제3자의 참여는 사전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경우 관할권의 문제나 적절한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련한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하거나 연관되는 계약에서 야기하는 분쟁의 동일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병합하는 문제보다 더 곤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41)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17조 5항.

42) 합의가 없는 경우 지정권자를 선정하는 체계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인의 기피와 교체, 중재비용의 심사 등에 관한 중재절차의 합의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 중재절차는 지속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당사자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채소금지의 중재합의가 무시되고 소송을 통해 관련 결정을 구하고자 하게 될 것이

에서도 규정되어 있었으나⁴³⁾ 그 규정이 명료하지 못했다. 즉, 당사자들이 상설 중재법정(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사무총장에게 지정권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그 상세함이 부족하여 명확하지 않았으며, 지정권의 거부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불명료하였다. 더구나 지정권자가 지정을 거절하거나 지정권자가 관련 행위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도 내용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기존의 중재규정은 중재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고 전술적으로 중재절차를 지연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본 규정에서 관련 상황에 따라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패널, PCA, 지정된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에게 기대되는 명확한 내용으로 보다 상세히 지정권자의 지정과 역할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을 상세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⁴⁴⁾ 더불어 시간적 제한규정을 둬으로써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규범적인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⁴⁵⁾

8) 중재판정부 지정 전문가

중재분쟁은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관한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전문가에 의한 필요한

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합의가 무력화될 것이다.

43)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6조 2항.

44)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6조, 제8조-10조(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을 지정권자가 지정할 권한), 제13조(중재인 기피와 관련한 지정권자의 역할), 제14조(중재인의 교체와 관련한 지정권자의 역할), 제41조(중재인 수수료와 비용의 심사에 관한 지정권자의 역할)..

45)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6조, 지정권자 선택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권자로서 개인, 기관, PCA사무총장 등을 지정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PCA사무총장이 지정권자를 대신하여 지정할 것을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다. PCA는 정부간 기구로서 광범위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권자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중재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PCA에 지정권 선택과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에 전폭적인 찬성은 어렵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제공이 요구된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 중재판정부의 지정 전문가 규정은 구중재규칙의 제27조를 보완하여 개정한 것이다.⁴⁶⁾ 구 중재규칙에서는 지정 전문가에 관한 자질이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이유로 하는 전문가 기피 등 중재판정부의 지정 전문가 관련 규정 상 언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중재규칙에서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정하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확대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 규칙을 통하여 전문가를 지정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상의할 것을 강행규정화 하였다. 또한 개정중재규정에서 지정 전문가의 독립성 및 기피에 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다.⁴⁷⁾ 전문가는 지정을 수용하기 전에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진술을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⁴⁸⁾ 이때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제한기간 이내에 지정 전문가에 대한 공정성이나 독립성 및 자질에 관하여 이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문가로 선정된 이후에 당사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전문가의 의견을 이유로 당사자가 전문가를 기피하는 신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⁴⁹⁾

9) 기타

개정된 중재규칙은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도 현대적인 중재실무 양식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중에는 시간계획서 작성, 클레임의 진술서, 중재의 통지, 중재인의 수, 면책규정, 모델약정서의 부록화를 들 수 있다.

(1) 시간계획서 작성

중재판정부는 실무적으로 중재관련 예비 시간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⁵⁰⁾ 본 규정은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신설규

46)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9조.

47)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9조 2항.

48) 용어에 있어서 shall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in principle은 자발성을 암시하고 있다.

49) 그러므로 원칙상 전문가의 기피는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전문가의 기피는 오직 새로운 정보가 제기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재판정부의 자유재량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50)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7조 2항.

정이다.

중재일정은 중재절차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하다. 중재일정은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절차 초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⁵¹⁾

따라서 개정중재규칙은 중재절차에 관한 시간계획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의 예측가능성 및 능동적 대응력을 향상시켜 중재제도의 실무적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클레임 진술서와 중재의 통지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0조는 기존의 중재규칙 1976의 제18조를 보완하여 규정한 것이다. 클레임진술서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사안 중에 '클레임의 법적 근거나 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⁵²⁾ 개정 중재규칙 제20조는 신청인의 클레임진술서에 모든 관련 문서 및 증거를 포함하도록 'shall'로 규정하여 1976년 중재규칙에서의 'may'방식과 구별하고 있다.

또한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언어와 중재지를 통지내용에 포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⁵³⁾ 이는 1976년 중재규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한편 구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중재통지사본과 계약서 사본 및 중재합의서 사본을 지정권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⁵⁴⁾은 개정 중재규칙의 다른 규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체 가능⁵⁵⁾하기에 삭제함으로써 중재규칙의 간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51) ICC 중재규칙에서는 중재관련 위탁조건을 수령한 때 혹은 그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서면진술이나 심문 등 중재일정을 마련해야 하며 중재일정과 그 변경을 중재법원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ICC 중재규칙 2012 제24조 2항 참조.

52)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20조 2항 e호. 다만 본 규정은 'as for as possible'을 전제로 포함하여 엄격한 강행규정으로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규정보다는 명료하게 개정되었다.

53)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3조 3항 g호.

54)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8조.

55)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3조, 제4조.

(3) 면책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지정권자, PCA, 중재인들, 그리고 기타 중재판정부에 의해 지정된 모든 사람들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준거법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명확하게 신규 규정하였다.⁵⁶⁾

새롭게 중재관련 당사자들의 면책을 명료히 함으로써 포괄적인 면책을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중재인의 수

소규모중재를 위한 실무적 중재인의 수를 개정 중재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⁵⁷⁾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⁵⁸⁾

그러나 다양한 분쟁의 발생과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구하는 대규모 분쟁이 아닌 경우 단독중재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재인 지정권자가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한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단독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중재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중재규칙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5) 표준모델약정의 부록화

UNCITRAL 중재규칙을 통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중재합의의 내용은 중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로서 신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

적합한 중재약정을 위해 UNCITRAL 구 중재규칙 1976에서도 표준모델약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관련 표준모델약정을 부록으로 옮겨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부록에는 표준모델약정 뿐만 아니라 권리포기 진술서, 중재인의 독립성에 관한 모델 진술서⁵⁹⁾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중재인의 독립성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본 개정

56)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16조.

57)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제7조 2항.

58)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5조, 개정 중재규칙 제7조 1항.

59)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1조.

중재규칙에서는 ‘IBA 국제중재인 윤리규정’⁶⁰⁾에 따른 표준모델진술서를 참조하여 부록에 추가하였다.

3. KCAB 국제중재규칙과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비교

현행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KCAB,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중재규칙은 2011년 6월 29일자로 대법원의 정식 승인을 받고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최신의 중재규칙으로서 ‘국제중재규칙’과 ‘국내 중재규칙’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2007년 1월 25일 이전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중재규칙으로 규율되었으나 2007년 1월 25일자로 ‘국제중재규칙’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명칭에 있어서 ‘국제중재규칙’과 함께 ‘중재규칙’으로 명명되고 ‘중재규칙’이 국제적 분쟁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적이고 불완전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함께 통용되는 현행의 국제중재 관행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현재의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2011이 소개되었고, ‘중재규칙’은 그 명칭을 ‘국내중재규칙’ 2011로 칭하면서 기존에 중복적이었던 국제적 중재요소를 삭제하여 전면적으로 국내중재를 위한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게 개정된 UNCITRAL 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의 주요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UNCITRAL 개정중재규칙은 계약적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확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적 성격의 분쟁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⁶¹⁾ 기존의 UNCITRAL 중재규칙 1976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in relation to that contract)의 규

60) ‘IBA Rules on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중재인의 윤리규정으로 중재인의 공정성, 신의성실, 독립성 고지, 기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61) UNCITRAL 개정중재규칙 2010 제1조 1항.

정⁶²⁾과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특징이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적용범위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른 사법적 분쟁(disputes in private laws)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⁶³⁾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표준중재조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표준조항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적 성격의 분쟁을 한정하는 표준중재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재 가능성 대상 분쟁을 일반적인 민사 및 상사계약상 분쟁을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둘째, 전자통신환경 수용에 관한 사상이다. UNCITRAL 개정중재규칙에서는 중재합의 서면형식요건을 삭제하고 그 해석을 적용 준거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통지 및 통신에서 전자우편, 전송기록물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여전히 서면을 주요 중재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지 및 교신의 경우 팩스, 텔렉스, 전시 또는 송신 기록이 남는 다른 교신수단을 허용하고 있다.⁶⁵⁾

전자통신을 수용하는 문제는 그 법률적 유효성 논쟁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준거법에 따른 해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서는 관할 법정지의 강행법규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제 규정은 전반적인 전자통신환경의 수용 규정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데서 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⁶⁾

셋째, 중재의 신청인에 의해 중재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62) UNCITRAL 중재규칙 1976 제1조 1항.

63) 우리나라 중재법 제1조.

64) 당사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분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 특허관계 분쟁,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관련 분쟁 등에서 사적자치를 부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재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광현, “한국 중재법제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국중재학회 20주년 학술대회, 2010.10.; 목영준, 전게서, 2011, p.66.

6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1, 제4조.

66)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중재의 경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중재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현행의 중재법은 서면의 중재합의를 강행규정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8조 2항 참조.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UNCITRAL 개정중재규칙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중재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본 규칙에 따른 구성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항변을 포함하여 지정권에 관한 제안이나 반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및 항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재통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⁶⁷⁾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피신청인이 사무국으로부터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신청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나 중재지, 준거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관할권에 관한 이의 항변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할권항변은 구성된 중재판정부⁶⁹⁾ 혹은 관할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을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개정에 맞추어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은 구 국제중재규칙에서나 새로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에서나 실효성을 수용하는 규정으로는 미흡한 내용이다. 즉, 중재판정부의 보전 및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일방당사자의 신청이 적절한 경우 즉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중재판정부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의 이유를 기재하여 명령이나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가능하다.⁷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구 규칙이나 개정국제중재규칙이나 본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다섯째, 불완전중재판정부(truncated tribunal)의 허용여부는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유익한 반면에 중재의 절차적 하자로서 논쟁될 수 있는 사안이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과 유사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의

67) UNCITRAL 개정중재규칙 2010 제4조 1항 및 2항.

6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1 제9조 1항 및 4항.

69) 중재판정부는 자기권한확정권(competence-competence)을 가지며 중재인의 중재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중재인 스스로가 그 중재권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7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8조 1항.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심리가 종료된 이후에 사무국의 결정으로 중재인을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중재인들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⁷¹⁾

불완전중재판정부 규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에는 언급이 없으며 주요한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에서⁷²⁾ UNCITRAL 개정 중재규칙과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수당사자중재 및 연합중재의 수용은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는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이 누락한 상태이다. 다수당사자 중재 및 연합중재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투자 및 플랜트계약 등에서 나타는 연쇄적인 계약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연관되어 있는 법률관계의 분쟁문제가 복잡한 다수당사자들 사이에 다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또는 특정 중재사건에 연계된 제3자를 추가하여 합동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쟁으로 다루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순된 중재판정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계약과 분쟁문제를 중재로 수용하기 위한 다수당사자 중재 및 연합중재에 관한 규정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중재규칙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하는 내용은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시간 계획서작성이나 절차진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권자의 권한 증대, 중재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면책규정, 그리고 중재인의 수를 규정할 때 3인의 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독중재인의 설정의 허용규정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도 중재절차 일정표의 작성,⁷³⁾ 중재인

7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4조 5항.

72) ICC 중재법원은 개정중재규칙 2012의 제15조 5항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불완전중재판정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AA 국제중재규칙은 제11조에서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으로 중재과정에서 불완전중재판정부를 고려할 수 있다. LCIA 중재규칙 제12.1조 역시 AAA 국제중재규칙의 규정과 동일하게 불완전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으로 중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73)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1 제15조.

의 수를 원칙적으로 1인의 단독중재인 규정,⁷⁴⁾ 중재인 및 사무국의 중재관련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통하여 중재절차의 효율성과 체계화를 증진하고 있는 특징은 서로 다르지 않으나 국제적 중재관행을 수용하는 접근방법은 차이를 보인다.⁷⁵⁾

III.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한계

UNCITRAL에서 새로 개정된 중재규칙이 현대적인 중재실무를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된 중재규칙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피할 수 없는 한계는 UNCITRAL 작업부의 구성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UNCITRAL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작업부의 구성으로부터 야기되는 필연적인 문제이다. UNCITRAL 작업부는 정부, 비정부의 대표로서 행위하며, 각각의 대표들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실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중재절차와 법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차이를 중재규칙의 개정의도와는 달리 쉽게 조화시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 내용은 부수적이며 추가적인 규정내용을 포함하게 되고 해석상 애매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성향을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면요건과 같은 형식요건의 규정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법리적 성향과 실무적 관행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일관되게 조화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규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기관중재화 경향은 당사자 자치와 중재규칙의 체계화사이에 간격을 크게하는 것이다. 개정중재규칙에서는 지정권자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중재인의 고지의무를 부담을 증가⁷⁶⁾시키고 있으며 중재인

7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2011 제11조.

75)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수의 경우 3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독중재인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단독중재인을 원칙으로 하면서 3인의 중재인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76)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1조.

과 지정권자가 책임으로부터 면책⁷⁷⁾을 특히 규정하여 기관중재화하는 경향을 폭넓게 보이고 있다.

개정 중재규칙이전의 구 중재규칙 1976에서는 개정중재규칙에서 보여지는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이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들의 협상 여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⁷⁸⁾

개정된 중재규칙이 체계화되고 규정화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유연하게 당사자 자치의 임의중재로서 분쟁당사자들이 본 중재규칙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임시적 처분 규정에서 예비적 명령(preliminary orders)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⁷⁹⁾은 국내중재법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너무 이른 규정으로 여겨지지만 앞으로 많은 국가들은 중재인에게 관련 규칙과 같이 일방적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규정이다. 이중에서도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예비적 명령의 신청 및 허용은 새로 포함된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다.⁸⁰⁾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특히 예비적 명령은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당사자가 임의조치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모델중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⁸¹⁾ 본 개정 중재규칙에는 관련 규정을 누락하고 있다. 임시적 처분의 실무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임에도 본 개정중재규칙에서 일방적인 예비적 명령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본 개정규칙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UNCITRAL 중재법제의 일관성의 측면에서나 중재제도의 실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나 논란은 남아있다.⁸²⁾

77)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16조.

78) 물론 이와 같은 불완전하고 관련 사안에 침묵하고 있는 중재규칙은 전술적으로 중재의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79)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2006, 제17조, 제17 A조, 제17 D조, 제17 E조, 제17 F조 및 제17 G조.

80)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2006, 제17 B조.

81) UNCITRAL 개정 모델중재법 2006, 제17 B조 1항.

넷째, 서면(in writing)의 형식요건이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곳곳의 규정에 여전히 남아있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의 형식요건으로이던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⁸³⁾를 삭제하고 이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요건에 관련된 규정을 일관되게 전자통신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래에도 활용 가능한 중재규칙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본 개정중재규칙의 다른 조항들에선 여전히 서면의 통지나 제시를 강행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중재청구진술서⁸⁴⁾와 변론진술서,⁸⁵⁾ 추가서면진술서,⁸⁶⁾ 중재판정부의 지정 전문가의 보고서⁸⁷⁾ 그리고 중재판정⁸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면(in writing)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⁸⁹⁾

다섯째, 구 중재규칙에는 중재인 면책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중재규칙에는 신설되었는데 중재인 및 지정권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문제이다. 우선 중재인이나 지정권자의 면책규정이 잠재적인 UNCITRAL 중재규칙의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이나 지정권자에게는 중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겠지만

82) 임시적 처분의 집행력이나 일방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예비적 명령의 허용 등의 문제는 논쟁이 많은 사안이다. 이 문제들은 국내 중재법제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UNCITRAL은 임시적처분의 집행력이나 예비적 명령의 허용과 같은 문제가 본 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당해 문제들은 중재에 관한 준거법에 의해 해결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견해다. 특히, 예비적 명령은 중재의 합리적인 특성에 반하고 많은 국가에서 그러한 명령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모델중재법의 관련 규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는 점이 관련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언급되기도 한다. 노태약, 전계논문, 2010, p. 133.

83) UNCITRAL 구 중재규칙 제1조 1항에 언급되어 있던 서면의 중재합의의 요건인 'where the parties to a contract have agreed in writing that dispute...'을 삭제하였다.

84)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0조 1항.

85)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1조 1항.

86)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4조.

87)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29조 1항 및 4항.

88) UNCITRAL 개정중재규칙 제34조 2항.

89) 여전히 관할지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의 형식요건과 중재판정의 형식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형식적 요소가 재심의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식요건에 관한 사안에 중재합의의 형식요건만 개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대칭적으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는 중재인의 여하한의 면책규정은 유쾌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재인 혹은 지정권자에 대한 면책규정 여부에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들은 중재인의 민사상 책임과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중재인의 권한 내에서 작위 혹은 부작위에 따른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⁹⁰⁾ 또한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중재와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고의나 의도적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단서를 추가하고 있다.⁹¹⁾ 뿐만 아니라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경우에는 관련 중재인의 면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⁹²⁾

이와 같은 중재규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 특히 중재인과 지정권자 또는 지정권자에 의해 지정된 당사자에 관한 면책규정을 새롭게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익엔 의문이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은 적용할 준거법 하⁹³⁾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⁹⁴⁾

여섯째, 중재의 기밀성 관련 일반규정은 미흡한 면이 존재한다.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은 기밀성과 관련한 2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즉, 심문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느 증인의 증언이 진행되는 중에 그 외의 증인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⁹⁵⁾ 또한 중재판정문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90) 목영준, 전거서, 2011, pp.161-162. 독일 민사소송법, 프랑스 민사소송법, 네덜란드 민사소송법 등. 다만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중재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중재법에 면책규정을 규정하고 있다.(인용)

91) ICC 중재규칙 2012 제40조, LCIA 중재규칙 제31조, AAA 국제중재규칙 제35조 등.

92) 목영준, 전거서, 2011, p.162. 이는 중재인 혹은 관련 기관에 관한 각국의 견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3) 준거법에 따라 계약적 책임면제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경우 중재인 혹은 지정권자의 책임은 사소하며 단순한 태만에 대해서만 면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4) 프랑스 항소법원에서는 ICC중재규칙의 면책규정 제34조를 무효로 판결하고 있다. *Cytec v SNF*, Paris Court of Appeal, First Division Section C, January 22 2009. 중재규칙이 당사자합의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법원의 강행규정에 반할 수는 없다.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⁶⁾ 중재에 임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명료한 기밀성을 보장하는 규칙을 기대하고 있다.⁹⁷⁾ 반면에 기밀성에 관한 일반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절차에서 보다 투명성을 증진하는 현행의 경향⁹⁸⁾에 대비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기밀성관련 일반원칙 및 투명성관련 특정 요건을 포함하지 못하였다.⁹⁹⁾

IV. 결 론

UNCITRAL 중재규칙은 1976년 채택된 이후에 투자자와 국가간 상사분쟁이나 국가와 국가 간 분쟁에 임의중재로서 그리고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적용될 중재규칙으로서도 폭넓게 분쟁해결에 이용되어 왔다. 2006년 UNCITRAL 중재위원회는 UNCITRAL 중재규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중재환경과 실무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에 UNCITRAL 중재규칙 역시 중재환경의 변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중재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상의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은 다소 파격적인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중재제도의 발전방향과 선도적인 중재규칙의 모델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95) UNCITRAL 1976 중재규칙 제25조 4항.

96) UNCITRAL 1976 중재규칙 제32조 5항.

97)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상거래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의 비공개원칙의 중재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이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로 명성을 침해할 여지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적지 않다.

98)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서 공공이익에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는 중재의 경우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99) 기밀성에 관한 합리적인 면책은 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공개 혹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다. 법적 권리의 주장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이나 중재판정의 거절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기밀성에 관한 일반조항은 기밀성의 의무가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는지 혹은 당사자이외에 누구에게 기밀성의 의무가 확대되는지, 어떠한 기밀성 면책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하여 본 개정에서 규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에서 특히 신규 규정으로 추가되고 있는 전자통신 환경의 수용,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 이전에 피신청인의 항변기회 제공, 다수당사자중재와 연합중재, 중재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 불완전중재판정부의 신설 등은 다소 파격적인 중재규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본 개정규칙은 중재인의 교체절차, 합리적 중재비용에 관한 요건, 중재비용의 심사, 임시적 처분의 상세화, 지정권자의 역할 증대 등 중재절차에서 지향해야 할 효율성 증대시키고 중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중재규칙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세계 여러 나라를 대표하여 구성된 UNCITRAL 작업부에 의해 오랜 시간의 논의 가운데 만들어지는 중재규칙의 모델이 되는 UNCITRAL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폭넓게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규칙을 통하여 개정된 규정들은 중재규칙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즉, 가장 실무적인 중재성격을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본 중재규칙이다. 그러므로 본 중재규칙은 실험적인 규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실무적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UNCITRAL 개정중재규칙이 기존의 1976년 중재규칙의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이며, 이와 같은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는 개정된 중재규칙 상 문제들은 중재인들과 중재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한 해결의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최근 개정된 국제중재규칙의 국제적 통일화 노력에 부합하여 전면적인 현대적 중재관행을 수용하고 있지만 특히 임시적 처분규정의 상세화 및 다수당사자중재와 연합중재의 수용 여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은 다른 중재규칙의 개정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적인 때론 파격적인 UNCITRAL 개정 중재규칙으로서 현행의 중재환경을 수용하는 중재규칙을 통해 중재의 발전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 및 활용이 요구된다.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적용 가능하므로 중재규칙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의 개정에 주요한 개정지침을 활

용¹⁰⁰⁾되는 UNCITRAL 개정중재규칙의 세부내용을 보다 상세히 비교 고찰함으로써 적용할 중재규칙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0) 예를 들어 카타르 국제조정 및 중재센터는 UNCITRAL 개정 중재규칙 2010을 모델로 중재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채택하고 있다. QICCA(Qatar International Center for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Qatar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ited by qcci.org

참 고 문 헌

- 강병근, “국제 분쟁해결 절차규칙의 개정 -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3.
- _____,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초안 내용의 분석과 방향검토”, 「중재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8.
- 노태약,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 서 경, “ICSID중재와 UNCITRAL 중재의 중재절차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 석광현, “한국 중재법제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국중재학회 20주년 학술대회, 2010. 10.
- _____,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8. 3.
-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8.
- 유병욱, “국제상사중재에서 불완전중재판정부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_____,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의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 이강빈, “UNCITRAL 중재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 ASIA Pacific Regional arbitration Group, Report on forty-sixth Session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arbitration), 5-9 February 2007.
- COIEL, IISD, "Revising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o Address State Arbitrations", February 2007.
- PLC Arbitra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0: key changes", Practical Law Publishing Limited, 2010. 8.
- SAA, "Revis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Stockholm Centre for

Commercial Law, Stockholms Universitet, 23 April 2010.

UNIS,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dopted", Press Releases, 29 June 201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N.9/614, 5 October 200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N.9/641, 25 September 200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CN.9/665, 30 September 2008.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RES/65/22, Sixty-fifth session Agenda item 77, 10 January 201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hirty first Session, 99th plenary meeting 15 December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0

– Focus on the Main Revised Provisions –

Yu, Byoung Yook

Arbitration is an essential methods of settlement for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have been in force after adoption in 1976. Over the 30 years, UNCITRAL Arbitration rules have been modeled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es for setting and revision on their arbitration rules.

UNCITRAL Committee has published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which entered into force after 15 August 2010. Therefore new version of arbitration rules are substituted for the previous version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since its enforcement.

The revised arbitration rules of UNCITRAL have been changed in various items for convergence with new trends and modern practices on arbitration includ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focused on resolving problems in practice and codifying best practic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rbitration conducted under the rules.

There are considerable in a number of important respects on the removing the restricted in writing requirement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apting the multiparties arbitration, joinder arbitration, truncated arbitral tribunal and adjustment in terms and condition and construction simply.

Also a number of provisions have been refined, varied and clarified with new articles included.

Conclusively the new revised arbitration rules fill a number of gaps which became apparent i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to bring into line with new modern practic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is paper focus on the study the problems and inspired points on significant revised provisions and its considerable points in arbitration environment. This paper is approaching to the comparisons of UNCITRAL revised Arbitration Rules 2010 with previous Arbitration Rules 1976 of UNCITR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2011 of KCAB.

Key Words : Revised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0, Arbitration Rules, Model Arbitration Law, Ad hoc Arbitration, Applicable Law, PCA